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순서

- 이렇게 읽어보세요 3
- 알아두면 좋은 단어 4
- 알기 쉬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란? 6
-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이 꼭 알아야 할 것 8

탈시설에 꼭 필요한 8가지

- 1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도록 지원하기 12
- 2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탈시설 하기 14
- 3 장애인의 선택 존중하기 15
- 4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사회 서비스 만들기 16
- 5 정부의 돈을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17
- 6 살기 좋은 집 지원하기 18
- 7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알리기 20
- 8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모습 존중하기 21

탈시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 1 탈시설을 위한 법을 만들 때 24
- 2 탈시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 서비스를 만들 때 32
- 3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때 38
- 4 시설 밖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때 48
- 5 시설에 살면서 겪은 피해를 배상할 때 58
- 6 탈시설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필 때 64

이렇게 읽어보세요

원문 과 함께 읽어보세요

이 자료는 원문(원래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알기 쉽게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의 원문이 궁금하다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큐알) 코드를 찍어보세요.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원문 보러 가기

조 와 항 을 살펴보세요

조와 항은 법이나 규칙을 적은 문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때, 그 내용을 보기 쉽게 담기 위해 구분해 놓은 순서예요.
조는 하나의 주제, 항은 그 주제에 담긴 내용이에요.
1개의 조에는 여러 개의 항이 있을 수 있어요.

예시 : 1조 2항 1조 5항 5조 3항 5조 4항

원문을 볼 때는 ‘조’의 숫자가 다른 기호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원문 기호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쉬운 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알아두면 좋은 단어

유 엔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기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엔은 192개의 나라가 가입한 국제 기구이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유 엔 장 애 인 권 리 협 약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엔에서 정한 약속.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의 법과 똑같은 힘을 갖습니다.

탈 시 설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자 립 생 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알맞은 지원을 받으며, 자신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것.

-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 정할 수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

권 리

어떤 일을 누리거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투표할 권리 등을 가집니다.
-

침 해

다른 사람의 권리,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것.

- 당연히 누리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합니다.

알기 쉬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란?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 주는 자료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시설에 사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시설에 들어갈 위험이 높은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담겨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료의 특성상 쉬운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원문의 표현을 최대한 담아낸 부분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유

- 장애인이 시설에서 겪는 폭력, 학대와 모든 종류의 피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겪었던 피해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까지

- 전 세계 7개 지역에서 회의를 열어 탈시설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500명이 넘는 다양한 장애인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장애아동, 장애여성, 탈시설 장애인, 백색증 환자, 기타 시민사회 단체 등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이 꼭 알아야 할 것

대한민국은 다음 내용을 꼭 알고 지켜야 합니다.

2조 6항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하는 건 차별입니다.

2조 6항

장애인을 시설에 살게 하는 것은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장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애인을 치료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2조 7항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하는 건 자립생활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조 8항

장애인을 시설에 살게 하는 것을 장애인을 보호하는
일이나 장애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조 8항

장애인을 시설에 살게 하는 정책을 멈추고,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2조 8항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돈을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조 9항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 ‘장애인 차별이
많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시설을 계속 운영하거나,
탈시설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2조 10항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시설에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데 장애인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장애인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2조 13항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게 즉시 시설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 투여 : 약을 직접 먹게 하거나 몸에 주사 바늘을 꽂아 약물을 넣는 것.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하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런 내용을 어기는 것입니다

- 5조 평등과 비차별
- 12조 법 앞에서 공평하기
- 14조 몸의 안전과 자유
- 15조 고문,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 16조 폭력,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 17조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기
- 19조 자립하여 동네에서 함께 살기
- 25조 건강하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보러 가기

탈시설에 꼭 필요한 8가지

1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도록 지원하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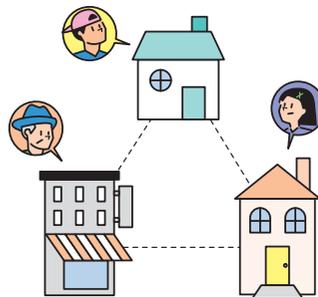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탈시설 하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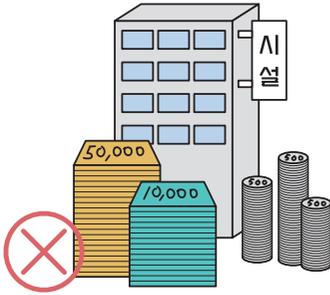
장애인의 선택
존중하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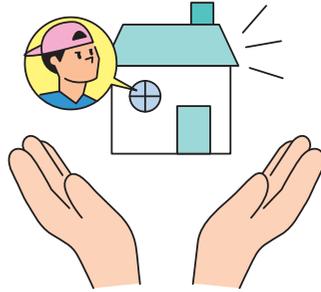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사회 서비스 만들기

5



정부의 돈을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6



살기 좋은 집
지원하기

7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알리기

8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모습 존중하기

1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도록 지원하기



3조 15항

장애가 있어서, ‘보호’나 ‘치료’가 필요해서, 장애인을 가두는 곳은 모두 시설입니다. 관찰, 돌봄, 치료, 예방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곳도 모두 시설입니다.

3조 16항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든,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든 모든 시설은 탈시설의 대상입니다.

3조 16항

시설의 안 좋은 부분을 조금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탈시설이 아닙니다.

3조 17항

자립생활은 모든 종류의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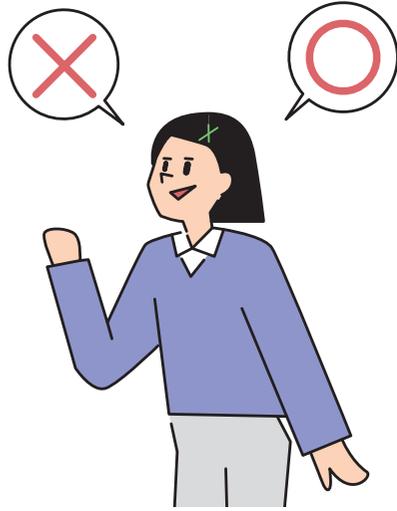
● 민간 :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

이런 공간이라면 그 곳은 ‘시설’입니다

-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곳
-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낼지 정할 수 없는 곳
- 나의 하루하루를 누군가가 감시하는 곳
- 나를 강제로 치료하는 곳
-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곳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없도록 지역사회에서 먼 곳으로 분리해 놓은 곳
- ‘지역사회’ 안에 있지만, 집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곳
-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활동을 해야 하는 곳
- 다른 사람과 반드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곳
-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결정하는 곳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곳
- 장애인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살게 하는 곳

2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탈시설 하기



3조 20항

정부의 탈시설 활동은 시설에 살고 있거나, 시설에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시설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애인이 이끌어야 합니다.

3조 34항

정부는 탈시설의 모든 과정에 탈시설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3조 34항

정부는 시설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탈시설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예시 : 서비스 제공자, 자선단체, 종교단체, 시설 직원, 노동조합 등

3 장애인의 선택 존중하기



3조 19항

탈시설은 장애인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자신의 선택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3조 21항

장애인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3조 2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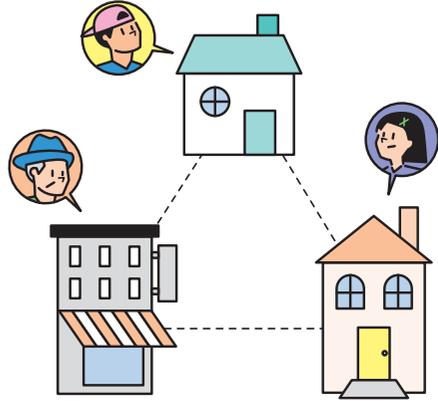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조 29항

정부는 장애인에게 시설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하거나,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은 장애인이 선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4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사회 서비스 만들기



3조 23항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조 23항

각종 지원 서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 제공될 만큼 다양해야 합니다.

3조 2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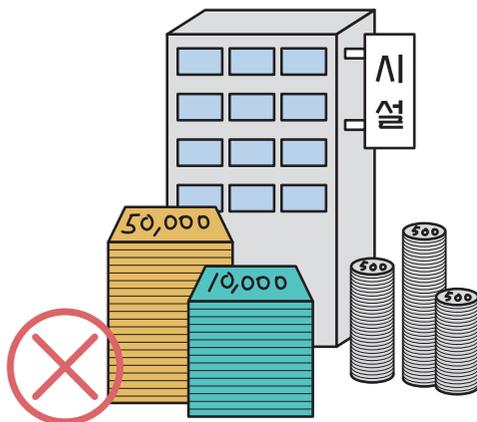
지원 서비스란 활동 지원, 동료 지원, 가족과 함께 사는 아동을 위한 돌봄인력 지원, 의사소통 지원, 이동 지원, 보조기술 지원, 주택제공과 주거관리 지원 등을 말합니다. 이 외에 교육, 일자리, 법, 의료 등 모든 서비스를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조 28항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는 또 다른 형태의 시설[●]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 예시 : 소규모 그룹홈, 공동 주택, 보호작업장, 긴급 돌봄 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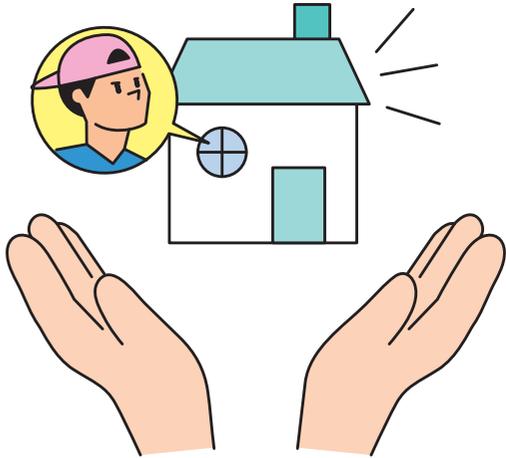
5 정부의 돈을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 3조 29항 정부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 3조 31항 정부는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는 즉시 장애인에게 돈, 물건, 지원 서비스 정보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 3조 31항 정부는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6

살기 좋은 집 지원하기



3조 32항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이나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적절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조 32항

장애인을 장애인이 유독 많이 모여 사는 집이나 마을에 보내는 것은 제대로 된 탈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한 집이나 마을에 모아서 의료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3조 32항

시설 운영 기관이 탈시설 장애인이 사는 집을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3조 32항

탈시설 장애인에게 집을 제공할 때 치료나 정해진 서비스를 받아야만 이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3조 33항

주거 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집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3조 33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있는 ‘장애인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말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설은 주거 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 내가 법에 따라서 직접 사거나 빌리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집
-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집
- 내가 오고 가기 편한 위치에 있는 집
- 가게, 병원 등 주변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한 집
- 약속한 기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
- 비싸지 않은 집

이런 집에서는 살도록 하면 안 됩니다

- 장애인만 모여 사는 집이나 마을
- 시설 운영 기관이 관리하는 집
- 정해진 치료나 서비스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집

7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알리기



3조 35항

정부는 시설에 사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시설에 들어갈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게 탈시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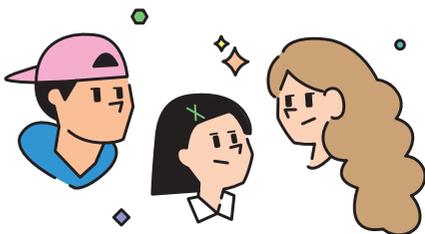
3조 36항

정부는 장애인, 장애인의 가족, 정책을 만드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등 시민 모두에게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면서 겪는 피해를 알려야 합니다.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한 약속이며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8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모습 존중하기



4조 39항 장애는 한 사람이 가진 여러 특징 중 하나일 뿐입니다.

4조 39항 모든 장애인은 각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조 41항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탈시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조 42항 장애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이나 비장애여성보다 더 자주 폭력, 학대, 차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탈시설을 진행할 때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4조 43항 장애아동도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아동이 시설에 살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조 52항 장애노인만 사는 시설, 치매 노인만 모여 사는 시설 등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시설 밖에서 살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탈시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의 가족, 시민 모두가
탈시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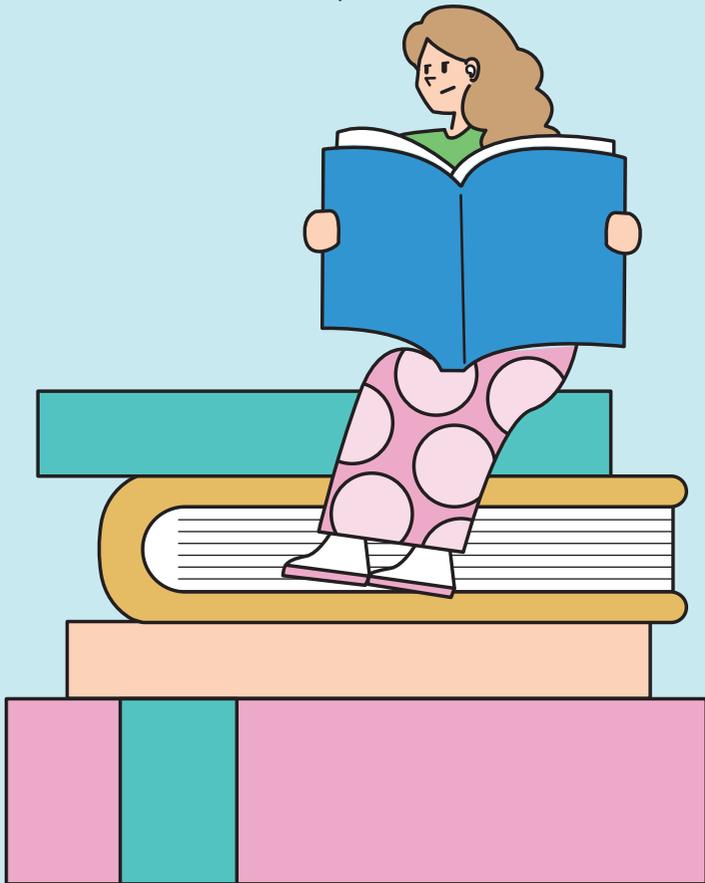
1

탈시설을 위한 법을 만들 때



원문 보러 가기

정부는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해요.



5조 54항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5조 55항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만든 후견인● 제도, 강제 정신과 치료와 같은 조치●●를 없애야 합니다. 강제 정신과 치료를 막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후견인 : 돈 관리, 집 계약 등 장애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 조치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시설에서 나왔는데 살 곳이 없어서
요양병원에도 가보고, 그룹홈[●]에도
가봤어요.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 그룹홈 : 장애인 3~4명이 생활 교사와 함께 사는 집.



우리도 무엇이든 직접 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대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주세요.

5조 56항

경찰 조사나 소송[●]을 할 때, 시설에 사는 장애인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언제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조 57항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옹호단체에서
장애인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5조 59항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하는 건 차별이라고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소송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긴 나쁜 일을 신고하는 건 어려워요. 신고하고 싶어도 마음도 힘들고, 신고하는 방법도 어려워요.



장애인이 시설에서 겪은 일을 말할 때 믿어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도움이 필요해요.



5조 61항

아래 3가지를 지켜서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합니다.

- 하나,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하는 법은 없어야 합니다.
- 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셋,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다가 시설로 보내졌을 때, 일상생활을 하다가 차별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5조 62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법, 차별금지법, 가족법, 의료법, 민법, 사회복지에 관한 법 등 여러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고쳐야 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법도 같이 바뀌어야 해요.



정부가 저와 제 가족에게 시설로 들어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좋았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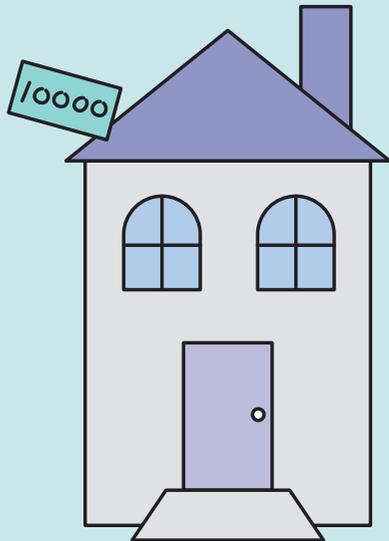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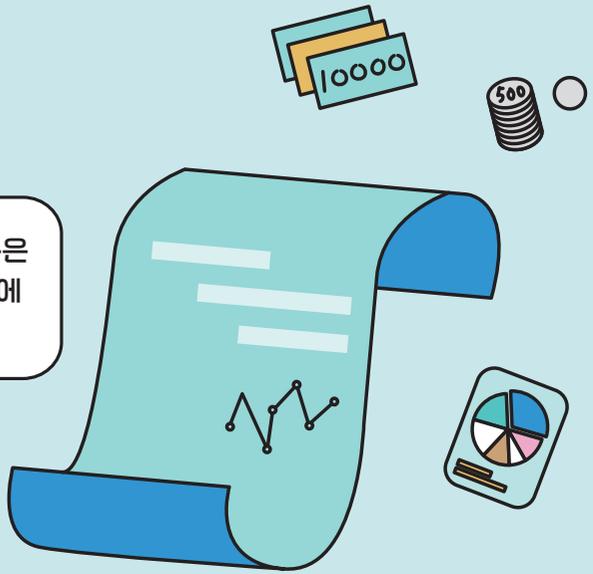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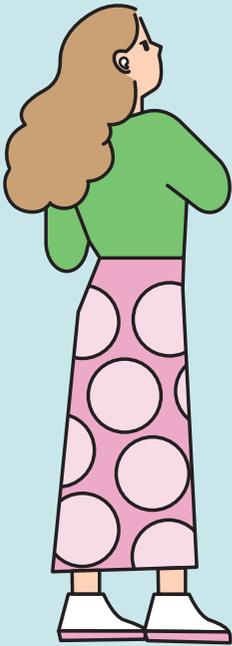
2

탈시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 서비스를 만들 때



원문 보러 가기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해요.



5조 63항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정부의 돈을 모두 확인해서 그 돈을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는 일입니다.

5조 64항

지금 운영하는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모두 확인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맞지 않는 서비스는 운영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더욱 질 좋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5조 66항

정부는 탈시설을 진행할 때 어떤 일자리가 필요할지, 그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인권을 침해한 적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정부가 탈시설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짜야 해요.



시설로 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아무도 시설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5조 67항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진행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진행할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등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5조 67항

탈시설을 계획할 때는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장관이나 장관만큼 힘을 가진 정치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5조 67항

정부는 탈시설 모든 과정에 탈시설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중요한 일은 대표 단체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5조 68항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및 대표 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선언에 따라 탈시설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 선언 : 국가, 단체, 개인이 주장, 의견, 생각 등을 정해서 널리 알리는 것.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탈시설을 하고 싶은지 묻은 다음에는 언제, 어떻게 탈시설을 지원할 건지 정확히 말해줘야 해요.



탈시설 장애인들이 만든 탈시설 권리 선언문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정부가 탈시설 선언을 만들면 좋겠어요.

탈시설 계획을 만들 때 탈시설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설에서 살아본 사람이니까 탈시설을 하려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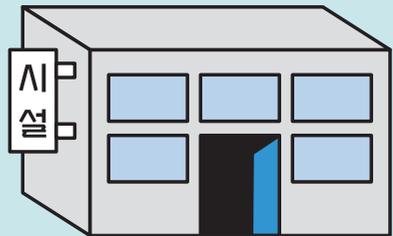


3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원문 보러 가기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어야 해요.



정부는 장애인이 시설에 처음 살기 시작한 때부터 그 장애인이 탈시설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설에서 나갈 기회가 똑같이 있어야 하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립해서 살 수 없고, 시설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만약 내가 어릴 때부터 자립을 준비했다면
시설에 나와서 사는 게 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는 시설에서 평생 있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시설에 사는 장애인에게는 탈시설 장애인 동료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들에게는 탈시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갈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서 장애인의 가족이 당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그 가족들에게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확실한 동의가 있을 때만 장애인의 가족은 탈시설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내가 자립한다고 했을 때 가족이 반대해서 슬펐어요. 그래도 나는 나간다고 했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직접 '나가고 싶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은 미리 지역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지 못하는 생활에 익숙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물건을 사는 법 등을 배우며 자립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시설 밖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살 수 있는 집, 교통,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정보 등이 있습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 수 있으려면 미리 지역사회를
경험해 봐야 해요.



내가 자립해서 어떻게 살지 같이 상담하고
계획을 세워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7조 95항

시설에서 나가는 장애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에 살면서 받았던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7조 98항

시설 운영 기관과 시설 직원 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7조 98항

시설 운영자와 직원은 자신의 시설에 있었던 장애인이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시설에 있었을 때처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 배상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돈 등으로 그 손해를 갚는 것.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나를 시설로 보낸 국가에게 사과받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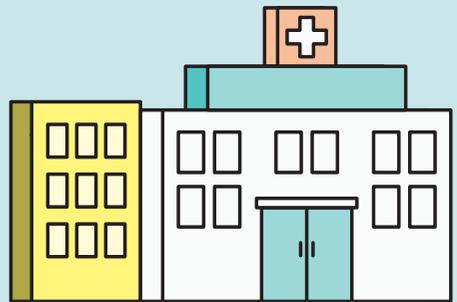
시설 직원들도 탈시설 하려는 장애인을
걱정하기보다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더 지지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시설 직원들이 시설 밖에서도 나를
시설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한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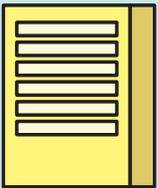
시설 밖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때



원문 보러 가기



내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요.



7조 99항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아주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7조 100항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이웃 등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7조 101항, 7조 102항

탈시설 장애인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디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자립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말고 경험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처음엔 이웃과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지내거든요. 이웃들도 장애인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아직도 긴장돼요.
어디든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7조 103항

탈시설 장애인은 차별, 어려움 없이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조 103항

탈시설 장애인은 영양,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약을 먹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조 104항

탈시설 장애인은 보호작업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은지, 내 몸에 맞는 운동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을 왜 먹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꼭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시설에서 이용하라고 정해진 병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동네병원에 가고요. 집에 직접 찾아오는 방문 간호도 이용하고 있어요.



보호작업장에 다닐 때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장애인도 원하는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7조 105항

탈시설 장애인이 집 없이 살거나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7조 106항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조 37항, 6조 75항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어떤 지원 서비스를 받을지 정할 때는 얼마나 장애가 심한지보다는 얼마나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시설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자립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맘껏
공부하고 싶어요.

신체장애인도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
있고, 발달장애인도 이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좋겠어요.



6조 70항

정부는 자립생활센터, 탈시설 장애인 단체,
자기 옹호 모임, 동료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6조 73항

동료 지원[●]은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일을 정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6조 81항

장애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노인이 시설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동료 지원 : 장애인이 같은 장애인 동료를 상담하고 응원하며 지원하는 일.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자립생활센터 동료 상담을 통해서 자립생활 정보를 얻었어요. 탈시설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으니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시설에서 살아보고 자립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나도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나이가 든 장애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시설이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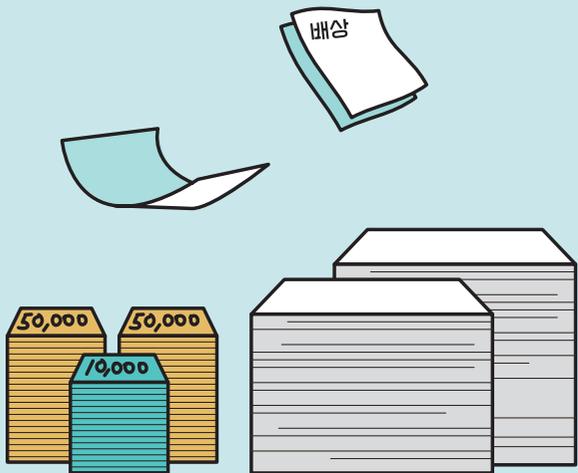


5

시설에 살면서 겪은 피해를 배상할 때



원문 보러 가기



시설에 살면서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정부는 모든 형태의 시설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한 일,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면서 겪은 인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공식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만들 때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됩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우리가 시설에 살아야 했던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시설에 보내졌지만 내 형제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형제들은 장애가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차별 아닌가요?

정부는 시설에서 살았던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만나 피해를 구제[●]하고 배상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진실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장애인이 시설에서 겪은 일을 조사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시설에 살게 하는 것이 장애인과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 구제 : 피해를 당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것.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내가 그동안 이리저리 시설로 보내져야 했던 시간에 대해 국가에게 사과받고 싶어요.



해외[●]에서는 한 정치인이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한 일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치인이 없나요?

- 2013년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총리 캐슬린 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6

탈시설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필 때



원문 보러 가기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탈시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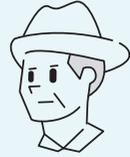


정부는 탈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더 좋게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탈시설을 잘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현재 시설에 살고 있거나 시설에 살았던 적이 있는 장애인의 나이, 성별, 장애 유형, 시설에서 살게 된 이유, 시설에 들어온 날, 시설에서 나간 날 등이 있습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지역마다 탈시설 정책이 모두 다 달라요.
좋은 건 더 좋게 바꾸고 안 좋은 건 개선되면
좋겠어요.



그룹홈에서 탈시설 하면 자립 정착금을
못받아요.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
탈시설 하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11조 130항

시설을 모니터링[●]할 때는 시설에 있거나 탈시설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11조 130항

시설 직원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1조 132항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곳은 시설 환경과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생활이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11조 137항

정부는 모든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 모니터링 : 어떤 활동이나 행동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때 관찰하고 살펴보는 일.

☞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시설 직원이 제게 시설에게 생긴 불편한 상황을 직접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시설 조사 하러 온 사람들은 원장, 직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그래야 장애인이 원하는 것, 장애인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8조 107항

정부는 감염병, 자연재난, 전쟁과 같은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계속 탈시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조 112항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국가는 비상 상황에 장애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탈시설 계획, 장애인을 위한 정보,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8조 113항

비상 상황이 끝나도 시설을 다시 짓거나 시설에 다시 사람을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끝나고 고장 나거나 망가진 것을 이전으로 되돌릴 때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말말말

시설에는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감염병이나 대피 상황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코로나19 이후로 시설 안에 장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도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기관입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하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22년 4월 20일,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런 일을 합니다.

- ① 우리는 시설에 살고 있거나 시설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냅니다.
- ② 우리는 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합니다.
- ③ 우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 ④ 우리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합니다.

자료를 만든 날 2023년 6월 21일

자료를 만든 곳 국가인권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편집 / 디자인 소소한소통

알기 쉬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25-01
ISBN 978-89-6114-964-8 03330